

1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등 17건 법안 처리)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선거여론조사에도 '현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함. 또한,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횟수를 8회 이내로 한정함. 그 밖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

●● 주요 내용 ●●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환경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
-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함.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해당 분담금은 개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인을 허용하고,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도록 정비함.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함. 빈집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함.

2월 23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건 법안 처리)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함.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은 검사에게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고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하는 편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을 금지함.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의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해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되는 주택 특별공급을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확대함.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해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역의 범위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보육기관 입소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와 순직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함.

3월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62건 법안 처리)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 출석요구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형량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는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를 부과함.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함. 한편, 국회의원으로 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로 뒤 부담금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행복도시법」·「혁신도시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함.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동주택분양자 등이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용 접차여권을 발급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된 국외체류자 및 같은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해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함.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자전거'를 이 법상의 자전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로의 통행 허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무 면제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함.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내용 ●●

-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규정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 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함.
- 대만과 같이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효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3년간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던 소위 '삼진아웃제'를 9년간 3회로 강화함. 또한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머릿돌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며, 외부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을 30~40%에서 50%까지 완화함. 아울러 상장 리츠의 경우 대주주의 부동산이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리츠가 주요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낮춰 대형 리츠 설립을 장려하고,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합과 조합원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대상에 부동산신탁회사와 위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시키고, 부동산신탁회사에 재건축을 맡기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신탁 사업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도록 하며,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내 승객이나 승무원에 대한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 이 외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하거나 항공기 조종실 출입 기도,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상향함.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기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이외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하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대해 청소년의 동의만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는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해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세월호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해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함. 위원회는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을 점검함.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체 및 기관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장에게, 군복무 적성분류를 위한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및 취소에 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군별·적성별 입영을 고려해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병역면탈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을 추가하고, 의무복무 기간에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함. 또한 병역이 면제된 북한 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행법의 시행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함. 또한 일정기간 미납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분야 유사·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을 추가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에 중소기업제품 우선적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점검을 위한 보고·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검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함. 또한,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세제지원, 창업지원 등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함으로써 노령연금 급여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 법령

은 신용카드·현금카드를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고액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중소기업 이상 사업자의 납부 편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부액 한도가 없는 곡세, 건강보험료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현금카드를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며,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해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가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했기 때문에 현행법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9건 법안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중견기업은 1%p, 중소기업은 2%p 상향 조정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증가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공제액을 중견기업은 500만원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현행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또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강화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대형마트에서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마련함.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전담에 따른 전문성 확보, 불필요한 행정소요 경감 등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더불어 일원화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향후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함.

●● 주요 내용 ●●

-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 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 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함.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소급 면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 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연장**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
이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와,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함.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함.

▶ **위생용품 관리법(대안)** = 공중위생과 관련된 물품으로 한정하던 것을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 냅킨,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일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등 (총 17종) 개인 위생물품까지 확대 규정하고, 관리체계와 관

련 위생용품의 관리부처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며, 제품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의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해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 전 수입신고로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부가 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인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함.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해 입주자·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 그 밖에도 공동주택관리 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현행법상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의 특수 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 피해와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아울러, 화재 보험 의무가입 시점은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나 주택법상 사용검사일로, 건물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는 취득일에,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소유주의 인지 시점으로 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앞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선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역을 구체화하며 벌칙을 상향함. 아울러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하루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 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며,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함.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권고함.

6월 22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1건 처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해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장당준비위원회 포함)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 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함. 중앙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함.

7월 18일

(주택법 개정안 등 33건 법안 처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최대 2년간 제한함. 이때 시·도지사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 목적이나 기간·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함.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대인에 대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특별관리지역 내 취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를율을 완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며,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해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함.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열지역은 입주자 자격, 채당침 제한, 공급순위, 전매제한 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며 위축지역은 건설·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등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적용하는 한편, 현재 전매행위 제한이 제외된 수도권 외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 호텔, 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당 승인관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지만,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또

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 처벌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해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항공기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폭발물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에게 기존 징역형(2년 이상 5년 이하) 외에 2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을 추가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활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하여도 이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별도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해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함. 그리고 국가기관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이법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함.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지정·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건 법안 처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함.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 업무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각각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함.

●● 주요 내용 ●●

-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
-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호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
-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
- 국가 재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
-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
-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8월 3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27건 법안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경찰·소방공무원의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 더 길어서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임. 이에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을 단축함. 소방공무원도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이에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시체를 다루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또한 시체해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함.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함.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영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9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135건 법안 처리)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뇌물죄(형법 제29조에서 132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함.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히 방지함.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하거나 생부(生父)가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생부인(親生否認)

의 소(訴)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친생주장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해 가족의 실질관계를 구현함.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최근 1년간 동일기업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최근 1년간 투적투자금액 상한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이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업의 명칭·업종·증권청약기간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지정제(6년간 회사가 감사인 자유선임 후 3년간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을 도입함).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반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신고대상 법률로 추가함. 또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 특히 법 역지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함.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종합대책을 수립함. 또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

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 의 연장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정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특정매개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경우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가축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또한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의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함. 아울러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예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하며,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해 부진한 예선사업자에게 예선 증선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예선업자 등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취소함.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입점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 수급의 안정성과 미세먼지의 급증에 따라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차에 대한 사용 완화가 필요함. 이에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

11월 9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113건 법안 처리)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해 권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하고,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 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해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청장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 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해 병역의무부와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뤄지도록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

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해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함. 또한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밖에 산림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해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함.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장은 이를 공개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고, 부품의 결함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제고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위탁교육 포함)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포함)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가 뺏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함.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67건 법안 처리)

▶**국회미래연구원법안** =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명, 감사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함.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 제를 선정하며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해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함. 법 개정으로 향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업장에 설치된 화장실, 워터파크에 설치된 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음.

▶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현재의 정책 흐름과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설치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충실하게 보장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해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함.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며,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함.

●● 주요 내용 ●●

-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12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1건 법안 처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해 과잉금지위헌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해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사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

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함.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공공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해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임명해 연구기관 간 원활한 연구 활동의 조정과 합리적 협동연구 지원체제의 구축 등 이사장의 책임성을 강화함.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명시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을 법 제도로화하는 조치로 현행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수행근거를 신설해 신청인 등의 욕구나 재산,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그 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와 위기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조정하고,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주요 내용 ●●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자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기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함.

• 기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 하는 기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해 종전에는 기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 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해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기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기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과세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강화하고자 근로장려금을 가구 유형별로 현행 대비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둔 외국인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며, 종교인소득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함.

12월 2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등 4건 법안 처리)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부충적 물적 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함.

12월 5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건 법안 처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함. 또한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과세연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시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를 인상함.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0%를 유지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로 상향하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 적용을 1년 유예함. 그 밖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20%포인트 세율을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함.

12월 8일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건 법안 처리)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대상을 확대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을 삭제함.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상향해 현행 결련의 약 52% 수준에서 약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결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해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해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 서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해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서 특수성을 가지는 농·수협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 당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 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함.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나 부품, 내압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수리를 한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함.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하며,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고, 자동차 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승차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며,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해 「항공보안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5건 법안 처리)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시간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 취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으로 정해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도록 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교 인력을 양성·채용함.

-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보상금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 또한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자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해 통보함.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궤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 배려, 초기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며,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또한,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과 권한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함.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도로관리청이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량·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